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방법,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규제확인 및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기간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센터 지정 대상 기관 및 수행 업무를 정함(안 제4조).
- 라.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요청 시 제출 서류와 공표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방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실증특례 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의 기준, 실증특례 연장 신청 및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에 관해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사.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내용, 시범사업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회의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자.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 모빌리티 지원센터 위탁업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 다. 합 의 : 정부부처, 지자체 의견조회 실시(20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제정안 전문
- 2) 입법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관측조사, 방문조사, 설문조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의 적정성 및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2. 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및 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의 구체성과 타당성,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분석의 타당성, 개선 방향의 실현가능성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4.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재원소요의 타당성, 재원조달·운용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첨단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의 안전계획의 적정성
6. 주민 및 관련 업계 갈등의 예방·해소가능성 등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모빌리티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여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분석·관리의 지원

3. 법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운영의 지원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이하 “특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4. 그 밖에 특화도시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도시를 지정하였으면 지정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시험·검증의 방법

4.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3.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이용자의 편익성
4.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 보조
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①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②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 시행 전까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제공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④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른 배상의 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실증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⑥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지

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⑧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⑨ 손해를 배상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의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불인 조건의 준수 여부, 같은 조 제7

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특례의 대상인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특례의 구역·기간 및 규모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인 조건(조건을 불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특성과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

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모빌리티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모빌리티 실증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10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⑨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⑪ 법 제14조제7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할 시범사업과 그 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과 그 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차관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3. 경찰청장

②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 안전을 미리 검토하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모빌리티 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모빌리티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모빌리티 관련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위원이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4조(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2. 창업교육 및 세무·회계·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3. 창업공간 지원
4.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 알선

제15조(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빌리티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 평가
3.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

보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및 심사기준의 통보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통보
 8.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9.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접수
 10. 제7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자료의 접수
 11. 제7조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2.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 보완자료의 접수
 1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과 그 대상지역 지정 요청의 접수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법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 니한 자	법 제29조제 1항제1호	35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나.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 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법 제29조제 1항제3호	35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다.법 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 상방안을 마련한 자는 제외한다)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29조제 1항제2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중지명 령을 위반한 자	법 제29조제 1항제4호	350만원	700만원	1,000만원